

대학원 법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규칙

2019년 8월 15일 제정

제1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시험과목) 대학원 법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동일 교수의 응시과목은 2과목 이내로 한다.

제4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법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법학과 전임교수로 한다.

제6조(문제 유형 및 배점) 문제는 서술형(논술형, 설명형, 사례형 등)으로 출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7조(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9조(시험결과 통지)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성적을 시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보충규정)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행을 적용한다.